파주시 공고 제2021 - 591호

「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12일

파 주 시 장

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○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5조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파주시 체육회와의 중복기능 제거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**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변경(안 제9조)**

○ **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변경(안 제10조)**

○ **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방식 신설 (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)**

○ **체육진흥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신설 (안 제23조2부터 제23조의6)**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1년 4월 1일 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, 전자메일
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체육과 체육진흥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1, 파주시청(별관) 3층 체육과

○ 전화 : 031-940-4832 /FAX : 031-940-4839 /전자메일(bakkun@korea.kr)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

※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도 기재